

의안검토보고

의안 번호	제104호	
건 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1997.6.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하영규	

1. 검토내용

가. 제안이유

- 청소년기본법 동법시행령의 개정, 정비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신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요지

- 위원회는 위원장1인 (구청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계 행정기간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 (안 제2조)
-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함 (안 제3조)
 -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2)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 3) 서초구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4) 기타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2. 검토결과

- 우리구는 청소년 육성법 및 동법에 대체 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정 91.12.31, 시행 93.1.1)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정 92.12.31, 시행 93.1.1)에 따라 청소년육성시책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의 서초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다가
-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개정 95.12.29, 시행 96.6.30)으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조례로 정할 것으로 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청소년육성시책 등에 관해 효율적인 심의와 자문에 응할수 있는 서초구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제안된 신규조례(안)은 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수당 등 본문 11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문화체육부 조례표준안에 준거하여 입안한 것으로 모범인 청소년기본법등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나 명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조문의 표현형식도 적합하다고 사료됨.

3. 관계법규

(개정전 구법)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지방청소년 위원회)

- ①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 직할시. 도 및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한다)에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7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이하 “시.도” 라 한다) 및 시. 군. 자치구 (이하 “시. 군. 구” 라 한다)의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각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 (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된 신법)

-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지방청소년위원회)
 - ①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한다)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개정 95.12.29)
 - ②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조직·기だ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2.29)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7조
동조 삭제 (96.6.29)

4. 기타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의 : 청년82501~516(96.4.29)호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표준안이 문화체육부로부터 이첩 시달
- 첨부 :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표준안

〈註解〉

서 울 특 별 시 (관 원 생 략)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484~5 / 전송 725-4219
처리부서 : 청소년과 (종로구 수송동 종로구청내 별관 5층) 담당 안병기

문서번호 청년 82501- 516

시행일자 1996. 4. 29.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가정복지과장

선	결	지	
접	일자 시간	1996. 5. 6	시
수	번호	1849	결
			구청장
			부서장
			직원
			공
			람
			담당자

제목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표준안 이첩 통보

- 문화부 청기 82501-196(96. 4. 22)호 및 청기 82501-201(96. 4. 23)호의 이첩 통보입니다.
- 청소년기본법 개정(95. 12. 29)에 따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관보 13296호(96. 4. 26)로 입법 예고되어 우리시의 의견을 문의하였으니, 관보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96. 5.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등 정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야 할 조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문화체육부 표준안을 이첩 통보하니 조례제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대상 조례

-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운영 (법 제13조 관련)
-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운영 (법 제22조 관련)
- 지방청소년 단체협의회 구성, 운영 (법 제25조의2 관련)

나. 시행시기 : '96. 6. 30

첨 부 조례표준안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청소년과장전결

수신처 서구 1~25

문화체육부

우110-703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 전화 (02) 734-0183 / 전송 735-1630

문서번호 청기 82501-196

시행일자 1996.04.22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표준안 통보

1. 청기 82501-14 ('96.1.15)의 관련입니다.
2. 청소년기본법 개정('95.12.29)에 따른 하위법령정비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야 할 조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표준안을 작성 통보하오니 조례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대상조례

-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법 제13조 관련)
-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운영(법 제22조 관련)
-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구성·운영(법 제25조의2 관련)
-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사용(법 제66조의2 관련)

나. 시행시기 : '96.6.30

첨부 조례 표준안 4부. 끝.

문화체육부장

수신처 각시·도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도, 시·군·구)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_____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识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체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3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

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어,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나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